

# 한국정치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사료: 전통의 계승

이 완 범\*

- 
- I. 서론: 한국정치사연구방법과 사료      IV. 기록보존전통 단절 극복 방안 모색
  - II. 한국의 기록보존 전통과 그 단절      V. 맺음말
  - III. 한국현대정치사 핵심자료로서 대한민  
    국 통치사료의 현황
- 

## I. 서론: 한국정치사연구방법과 사료

### 1. 역사적 접근과 이론적 접근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은 역사학과 모든 사회과학 심지어는 자연과학, 의학에서도 채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접근 중의 하나이다.<sup>1)</sup> 역사적 접근은 사료에 의지하여 사실확인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방법(method)이자 어프로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치학

1) 물론 역사적 접근 중에는 실증주의(혹은 과학적 역사학)도 있을 수 있고, 맑스주의(Marxism), 사회 구조사학, 역사주의(historicism, 역사에서 법칙을 추구), 역사적 상대주의(historism), 프랑스 아날 학파, 독일구조사 및 사회사 등 다양한 접근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개념이 아닌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려 한다. 즉 실증주의, 맑스주의, 역사주의, 역사적 상대주의와는 달리 단일 신념체계나 방법론이 없는 다소 나이브한 narrative method를 바로 역사적 접근이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approach)이며 엄밀한 방법론(methodology)에 입론해 있지는 않다. 공간-비공간 된 문서와 증언 등에 의존한 ‘역사적 고증’ 방법과 연대기적 서술(chronological description)-이야기체식[서사적] 방법(narrative method)이 주요 방법이다. 즉 역사적 접근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문헌자료와 증언자료, 기록물 등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기술하는 동시에 그 일들 사이의 관계성2)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19세기 역사학의 주류를 차지했던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 사학은 역사학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wie es eigentlich gewesen ist; 그것이 본래 있는 그대로)에 관한 학문으로 이해하였다.3)

편년체적 역사구성(a chronological composition of history)은 그 단순한 방법적 특성 때문에 복잡·정교한 몰역사적 분석기법이 흔히 범하기 쉬운 ‘인과관계혼동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야기체식[서사적] 서술방법(narrative method)은 기원전 5세기경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Peloponnesian War)를 서술했을 때부터 등장했다.4)

사회구조적 역사와 계량적인 과학적 역사학이 미국 역사학의 주류적 접근을 차

- 2) 그렇다고 이론적 방법론이 추구하는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치중한다.
- 3) 랑케는 19세기 실증주의 역사학의 태두였으나 사실을 확인할 뿐 법칙이나 이론화를 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실증주의의 절반을 포기하고 단지 실증적 접근을 했을 뿐이다. 그의 이러한 사관은 소박한 사실주의(naive realism)이라고 명명된다. 역사적 사실은 일회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반화나 보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객관적인 서술이 과학의 최고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박성수, 『역사이해와 비판의식』, 종로서적 (1980), 15쪽. 또한 전통적으로 역사학은 정치사 중심이었는데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의 등장으로 정치사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19세기 랑케 사학의 영향으로 정치사 중심의 역사가 다시 주류를 이루었다. 정치사의 결합은 설화적이거나 교훈적이라는 것이다. 정치사가 주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사-문화사적 접근이 등장했다. 랑케 사학은 기존의 현학주의를 탈피하고 ‘원사료 제1주의’와 철저한 ‘사료비판’을 도입함으로써 현대의 역사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성수, 『역사학개론』, 삼영사 (1977), 356~358, 310~311쪽.
- 4) 동양에서는 『左傳』과 『史記』가 간행되면서 역사서술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의 사서는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주로 가지고 있었다. 전해중, 「중국인의 역사의식과 역사서술」, 전해중·길현모·차하순, 『역사의 이론과 서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75), 20~27쪽. 기록은 사료(자료)의 성격을 가지며, 서술은 사서(연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사료와 연구의 구별은 후술하고자 한다.

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현대에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접근이다. 이야기 체식 접근은 사회구조적 접근과 계량적인 과학적 역사학 모두를 비판하지만 이야기 체식 접근에 어떤 뚜렷한 방법론적 지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료를 경험적 방법으로 설명(explanation)-분석(analysis)하기보다는 연대기적으로 재구성·서술(description)하여 진실을 복원하는 방법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5)</sup> 역사적 접근법은 ‘사료의 분석과 비판을 통한 실증적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증주의적 방법과는 다르다. ‘실증적인 태도’와 ‘실증주의적 방법’은 그 뉘앙스가 다르다. 현대 사회과학과 역사학에서 실증주의적인 ‘이론적 분석’(theoretical analysis)의 유용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철저한 자료수집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균형 있는 해석,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의 동원은 역사연구의 초보적 전제인 사실 확인을 한 연후에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복원이 이루어진 후에 이론적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

5) Lawrence Stone, “The Revival of Narrative : Reflection on a New Old History,” *Past and Present : A Journal of Historical Studies*, No. 85 (Nov. 1979) ; Lawrence Stone, *The Past and the Present*, RKP, 1981, pp. 74~96에 채수록 ; 로렌스 스톤, 「서술식 역사의 부활 : 낡은 신사학에 대한 반성」, 이광주·오주환 (공편), 『역사이론』, 문학과지성사(1987), 181~212쪽 ; Larry J. Griffin, “Narrative, Event - Structure Analysis, and Causal Interpretation in Historic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No. 5, March 1993, pp. 1097~1098. 이 접근에 대한 맑스주의적인 사회구조적 접근의 비판은 다음에 나와 있다. E. J. Hobsbawm, “The Revival of Narrative : Some Comments,” *Past and Present : A Journal of Historical Studies*, No. 86, Feb. 1980, pp. 3~8. 이야기체식 접근법을 사례연구와 연결시켜 case/narrative approach를 population/analytic approach와 대비시켜 보는 견해는 다음에 있다. Andrew Abbott, “What Do Case Do? : Some Notes on Activity in Sociological Analysis,” Charles C. Ragin & Howard S. Becker, eds., *What is a Cas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62~68 ; 윤민재, 「한국의 현대 국가형성과정에서 중도파의 위상에 관한 연구, 1945~1950」,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1999), 37쪽. 에벗은 다차원적 시간의 수준과 복합적인 인과성을 기반으로 한 다면적 사회과정을 이론화하기 위한 서사적 실증주의(narrative positivism)를 제창하여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실증주의와 이야기체식 접근을 종합하고 있다. Andrew Abbott, “History and Sociology: The Lost Synthesis,” *Social Science History*, Vol. 15, 1991, pp. 226~227 ; Andrew Abbott, “From Causes to Events: Notes on Narrative Positivism,”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20, 1992, pp. 433~434 ; 김경일, 「역사사회학의 방법과 쟁점: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지승중·박영은·박명규·김영범·김경일,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252쪽.

다. 개념 규정과 사실 확인이 아직 미흡한데 이론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학문연구 태도가 아닌가 한다.<sup>6)</sup>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 객관적 사료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실확인 작업을 위해 다른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이 주관적 방법인 ‘비판적 해석’이다. 해석학(hermeneutics)적 방법은 주관적인 행동(action)과 객관화된 사실(fact) 뒤에 실재하면서도 숨겨진 의미(meaning)와 진실을 규명해내는 도구이다.<sup>7)</sup> 내적 비판으로서의 해석학적 비판(interpretative criticism)은 먼저 字義(the literal meaning)를 확정하고 저자의 숨은 진의(real meaning)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객관적 사료 가운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을 때 해석의 방법을 과감히 채용하여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이해’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방법으로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의 남용은 학문적 업적 자체를 상대

- 
- 6) 故 김영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의 사회과학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기왕의 연구의 틀을 통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기존의 이론을 매개로 삼는다. 이러한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 본래의 생동감을 상실하기 쉽다. 그래서 보통상식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모르고 있다는 판단도 생긴다”고 말하여 역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국, 『역사연구와 정치학』, 『한국정치학회소식』 제23권 5호 (1999년 12월 28일), 5쪽. 현대 사회과학은 하나의 총체적 사회현상을 각 분과의 시각으로 각각 전문화하여 인식한다[분과화(compartment) 경향]. 사회현상은 동일한데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나 통합적 접근(예를 들면 political economy)에 의해 전체적 안목을 가지려는 경향도 출현했다. 그런데 정치학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이론화보다 낮은 경지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신복룡, 『한국 정치 사학사』, 신복룡, 『한국정치사』 제4판, 박영사 (2003), 80쪽.
- 7) 해석학은 17세기 유럽에서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으며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Bollnow, Ricoeur, Habermas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Elementarkurs Philosophie*, Düsseldorf : Econ Verlag, 1977 ; 백승균 (역), 『철학적 해석학』, 경문사(1982) ; Otto Pöggler, *Hermeneutische Philosophie*, 1972 ; 박순영 (역), 『해석학의 철학』, 서광사, (1993) ; Josep Bleicher, *Contemporary Hermeneutics as Method, Philosophy and Critique*, RKP, 1980 ; Mark E. Kann, 한홍수·김영래 (공역), 『현대정치학의 이해 : 정치이론과 연구방법』, 대왕사 (1986), 20~21쪽. 칸은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1) 감정이입(empathy), 2) 이론적 해석(theoretical interpretation), 3) 상상적 재구성(imaginative reconstruction), 4) 검증 재구성(testing reconstruction) 등의 4단계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Mark E. Kann, *Thinking about Politics : Two Political Science*, West Publishing, 1980, pp. 174~179. 한편 자연과학도 ‘기술’의 방법을 채용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설명’과 ‘역사적 기술’의 양분법이 현대의 사회과학에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화시키고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우선 문서를 통해 실증을 한 연후에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확증이 설 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 1 해석학, 실증주의, 역사적 접근의 비교>

	역사적 접근-narrative method	실증주의-경험주의적 사회과학	해석학
대상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	객관적 행태(behavior)	주관적 행동(action)
방법	기술(description)	설명(explanation) -분석(analysis)	표현된 의미를 이해(understanding)
역사학의 목표	이야기체식 역사의 구축	이론화	해석
방법의 목적	이론화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	사실만으로 설명	사료 뒤에 숨겨진 의미 추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일원화에 대한 태도	-	방법론적 일원주의	방법론적 다원주의
학문적 지향	인문학지향	사회과학지향	인문학지향
과정과 원인	과정추구(how)	원인추구(why)	원인추구(why)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자들은 인과율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분석하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그대로 도입했다. 따라서 방법론적 일원주의(methodological monism)의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인간의 객관적 행태(behavior)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맞서 해석학적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과학에 객관적 법칙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인간의 주관적 행동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과학·역사학자들이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인간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를 채택했던 것이다. 해석학자들은 각 개인의 상이한 역사·문화경험에 의해 형성된 전이해(Vorverständnis ; preconception ; 선입견, 원초적 인식)에 영향받은 주관적 행동(handeln ; action)을 해석을 통해서 이해(verstehen ; understanding)하려 한다. 사

회과학의 탐구대상은 적극적·주체적·사회적 행동이므로 소극적·객관적인 행태의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실증주의자들과 같이 설명-분석하기보다는 이해해야 한다고 해석학자들은 주장한다. 참고로 역사적 접근(이야기체식 서술 방법)과 실증주의, 해석학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경쟁적 접근 중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역사적 기초 연구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접근이라고 본 연구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 2. 사료와 사료비판

역사적 접근을 정치사 연구에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점은 사료의 선정이다. 역사가와 그가 연구하는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고리는 사료이며, 정치사 연구에서는 사료가 인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료(historical materials)의 분류 문제를 언급하고 어떤 것이 보다 중요한 자료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료와 자료(sources)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1차 자료(primary sources)와 2차 자료(secondary sources)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자료가 1차 자료인지 자료의 1차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능력의 강약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증거능력은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1차 자료가 되다가도 다른 연구에서는 2차 자료가 될 수 있다.

8) 차하순 교수는 「사료의 비판」, 차하순,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1988), 72~73쪽에서 1차 사료는 고찰대상의 시기나 주제가 동시대(혹은 거의 같은 시대)에 제작된 유물이거나 저술된 저작물이며, 역사가에게 원료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기본자료이고, 그의 해석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반해서 2차 사료는 고찰대상의 시기나 주제가 시간적으로 떨어진 시대에 만들어진 실물적 자료이거나 저술된 저작물로서 주로 1차 사료를 보충하고 완결하는 자료이다. 2차 사료에는 1차 사료에 관한 설명, 판단, 견해 또는 의견 등이 담겨 있는 자료들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1차 사료는 유물, 유적, 고고학적 자료, 금석문, 지도류, 통계, 도표, 그리고 문서류, 서간, 저술, 비망록(memoirs), 전기 및 자서전, 고문서, 잡지, 신문, 회고록, 선집 및 번역물 등과 녹음자료, 연설문 등이라는 것이다. 2차 사료는 서적, 논평, 해석, 해설, 각주, 전기류 및 비평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분류 중 전기는 1-2차에 모두 속하며, 자서전과 같은 자료를 과연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2차의 구분보다 다른 대안적 구분을 채택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별과 유사한 것으로 독일 역사학에 사용되었던 殘跡(Überreste; 유물, 유적, 殘餘로 번역되기도 함)과 傳告(Tradition)의 구별이 있다.<sup>9)</sup> 잔적은 행동의 산물이다. 예를 들면 공룡의 발자국이나 15세기 인쇄술 발명 이전의 필사본을 잔적이라 할 수 있다. 전근대 이전의 자료는 사본이나 비문과 같은 것들이 주류이므로 위조인지 아닌지 그 진위(authenticity)에 대하여 외적 형태만 비판(external criticism)하면 되며 이들 자료는 명실상부한 1차 자료이다. 의도적인 기록이 아닌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전고는 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목격자의 이야기이다. 이는 내적 비판(internal criticism)을 거쳐야 하는 자료이다.<sup>10)</sup> 전고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애매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보다는 잔적과 전고의 구별 예에서 시사점을 얻어 ‘사료’(이는 협의의 사료로서 자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사료[historical materials, 광의의 사료]와는 구분된다)<sup>11)</sup>와 ‘사서’(연구)의 구별을 자료 구별의 기준으로 개념화하려 한다. 사료는 후세에 대한 배려 없이 쓰여진 비고의적 기록(unpremeditated records)이다. 문서(document)와 기록(records)으로 이루어진다. 사서는 모두 의도적 기록(intentional records)이다. 예를 들어 매뉴스크립트, 당시 잡지의 글들은 고의적 연구물로서 위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사료는 아니며 연구이지만 동시대적 기록으로서 1차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12)</sup> 따라서 본 연구자는 1. 사료(①문서, ②비의도적 기록, ③무의식적으로 남긴 증언; unwitting testimony), 2. 연구(①동시대의 의도적 기록, ②후대의 기록)로 나누어서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미제국에서는 19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문서와 비의도적 기록

9) E. Bernheim, *Lehrbuch der historischen Methode und der Geschichtsphilosophie*, Leipzig, 1903, pp. 230-234 ; 양병우, 「사실」, 양병우, 『역사의 방법』, 민음사(1988), 32쪽에서 재인용.

10) 내적 비판은 사료의 해석적 비판(interpretative criticism)을 통해 신빙성(reliability)을 검증하는 것으로 해석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박성수, 『역사학개론』, 265쪽.

11) sources를 사료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차하순, 「사료의 비판」, 차하순, 『역사의 본질과 인식』(서울: 학연사, 1988), 67쪽]이 글에서는 자료로 번역하고자 한다. 위 연구에서는 evidence, 독일어 Quelle도 사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12) 양병우, 「사실」, 양병우, 『역사의 방법』, 민음사(1988), 29-71쪽; 차하순, 「사료의 비판」, 차하순,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1988), 66-83쪽. 원자료와 사료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John Tosh, *The Pursuit of History: Aims, Methods and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Modern History*, 2nd ed. Longman, 1991, pp. 30-71 참조.

은 사서나 연대기가 없을 때 사서 대신 보완적인 자료로 이용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료집중화에 따라 문서고가 생기고 작자의 편견이 적은 문서 자료를 주요 자료로 간주하기 시작했다.<sup>13)</sup> 오늘날의 역사 연구에서는 비공간된(unpublished) 사료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간주한다.

그런데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국내 인사들의 회고록은 그 과장과 왜곡을 극복할 수 있다면 훌륭한 자료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준1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자신의 현재 입장을 事後的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채색된 경우가 있다. 자료는 항상 일정한 정도로 개인적 태도에 의해서 채색된다. 연구자는 사실로부터 주관적 편린을 추출하고 참된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꼼꼼한 비판을 해야 한다.<sup>14)</sup> 또한 당시 최고 지도자들이 저술한 자료의 대부분은 누구인가에 의해 골격이 완성된 것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sup>15)</sup>

또한 사료와 연구를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프레임웍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원사료(raw materials)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선 선행자들의 기존 연구물부터 검토한 후에 문서고를 뒤져야 할 것이다.

문서고에서 추출된 사료라고 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맹목적인 원사료 숭배사상에 사로잡혀서는 안될 것이다. 문서도 사서 못지 않게 편견이 개입될 여지 있으므로 반드시 사료비판을 해야 한다. 사료의 수집보다 비판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sup>16)</sup>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발행된 정보문서의 경우 신뢰

13) 박성수, 『역사학개론』, 252~253쪽.

14) 소련과학아카데미 세계사연구소·N. A. 에로페예프, 『역사란 무엇인가』, 신승원 역, 공동체 (1991), 139쪽에 의하면 맑스주의는 증인, 목격자의 지적이 환경, 시대, 계급적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료를 엄밀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것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된다. 즉 주관적 증언을 사회경제적 기초에 입각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5) 예를 들어 1961년 직후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자문역을 하고 있었던 박상길(후일 청와대 대변인 역임)은 박정희의 부탁을 받아 일종의 대통령선거용으로 『국가와 혁명과 나』를 집필하였으며 박정희가 다 읽어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대필된 책이었지만 박상길은 이 책이 박정희의 철학·사상·정치·경제·문화·외교·사회관·인생관을 대변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박상길, 『나와 제3-4 공화국』, 한진출판사, (1982), 114~119쪽. 비록 타인이 저작하여 박정희의 이름만 빌린 것이라고 해도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16) 블로크(Marc Bloch)는 “철저한 대조(cross examination)야말로 훌륭하게 수행된 역사연구의 제1

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사료 비판과 함께 다른 자료와의 상관적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석한다면 여러 정보들에서 작성자의 의도를 분리-탈각하여 ‘사실에 입각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연구와 같은 특정한 분야의 경우 사료 선택과 해석에 있어 보다 면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sup>17)</sup>

이 글에서는 한국정치사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 분야 사료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고유의 기록보존 전통과 연관시켜 논하고자 한다.

---

차적 필요성이다”라고 말했다. Marc Bloch, *The Historian's Craft*, 1953, p. 64; 차하순, 「사료의 비판」, 차하순,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 1988), 76쪽에서 재인용.

- 17) 북한 생산 자료의 경우는 당시에 간행된 공식 또는 半공식적 자료, 예컨대 정부문서, 팜플렛, 신문, 잡지, 연감, 서적 그리고 방송 모니터록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의 현대역사를 거의 지배했던 최고위층 김일성의 연설문류와 김정일의 연설문류, 『로동신문』 등의 신문류 등이다. 이들 자료에 대해 불신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한홍구, 「북한관계 문헌 해제」,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화사(1989), 286~326쪽. 북한사료들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료비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료비판의 방법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자료를 살펴볼 때 수사에 기초해 실재를 구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Samuel S. Kim, “Research on Korean Communism: Promise versus Performance,” *World Politics* Vol. 32, No. 2, January 1980, p. 290. 북한의 문헌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관찬 문헌에 나타난 서술을 북한의 현실과 동일시하면 관찬 의도에 따르게 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측 공식문헌과는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 모색, 새로운 사실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한울(1999), 69쪽. 예를 들어 김일성과 김정일의 발표된 연설 등은 事後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개작되며 대필자(speech-writer)에 의해 대필된 경우가 많으므로 연설자의 생생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발표 원본을 근접할 수 있는 판본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남한에서 발간된 남북정상회담의 기록[예를 들면 남한의 신문이나 최원기·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김영사(2000) 등이 대표적이다]등도 교차비교(cross check)를 위한 자료로서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대중 정부가 생산한 남북회담 회의록 등도 후일 공개되어야 하며, 결코 소각되거나 은폐되지 말아야 할 필수적 자료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최근 북한 역사에 관한 자료의 경우 공식문헌과 다른 문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남북 양쪽의 회고록이나 인터뷰가 체계적으로 생산되지는 않았다. 교차비교를 위한 사료 발굴 작업은 정책결정자의 회고록 발간이나 인터뷰가 가능한 후일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II. 한국의 기록보존 전통과 그 단절

### 1. 우리의 기록보존 전통

한국정치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접근법이나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조선시대 한국정치사 연구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접해야 하는 사료는 역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왕조실록은 그 압축적인 성격 때문에 핵심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보다 더 세밀한 기록 검색을 위해서는 왕명을 출납하던 국왕 비서실 승정원의 일기인 『승정원일기』를 검색해야 한다.<sup>18)</sup>

우리의 자료보존 전통<sup>19)</sup>을 세계가 인정하여 『조선왕조실록』(1997년 10월 선정)과 『승정원일기』(2001년 9월 선정) 등 4종의 기록이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기록유산(World Documentary Heritage;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유산을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라고 함)에 지정되었다.<sup>20)</sup> 세계에서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자료가 있는 나라는 2002년 현재 33개국에 68점에 불과하며 4건 이상인 나라는 러시아(7건), 독일(5건), 오스트리아(5건), 그리고 덴마크(4건) 외에는 없다.<sup>21)</sup> 이렇듯 우리의 기록 보존 전통은

18)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승정원일기』에 비한다면 『실록』은 그 자료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2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책 모두 의도적 기록-史書이므로 殘跡(Überreste)이 아니라 傳告(Tradition)이므로 1차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고전자료의 내용 속에 모두 공적인 문서와 편지와 같은 1차적 자료들을 담고 있으므로 1차자료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물론 실록이나 前朝史를 편찬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과 일본 등의 동양에 공통된 전통이다. 실록의 경우 우리의 것이 중국 것보다 더 충실하다는 차이점은 있다.

20) 이외에도 1997년 10월에 선정된 『훈민정음』과 2001년 9월에 선정된 『직지심체요절』 하권이 있다.

21) 유네스코에 의해 공인된 세계기록유산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숫자는 지정년도이며 국가별 알파벳 순) ① Argentina - Documents of the Viceroyalty of Rio de Plata (1997), National Archives, Buenos Aires / ② Armenia - Mashtots Matenadaran Ancient Manuscripts (1997), Mashtots Institute of Ancient Manuscripts, Yerevan / ③ Australia - The Endeavour Journal of James Cook (2001),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anberra / ④ Australia - The Mabo Case Manuscripts (2001),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anberra / ⑤ Austria - Vienna Dioscurides (1997), Austrian National Library, Vienna / ⑥ Austria - Final Document of the Congress of

Vienna (1997), Austrian State Archives, Vienna / ⑦ Austria - The Historical Collections (1899-1950) (1999), Phonogrammarchiv,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Vienna / ⑧ Austria - Papyrus Erzherzog Rainer (2001) Austrian National Library, Vienna / ⑨ Austria - The Vienna City Library's Schubert Collection (2001), Vienna City Library, Vienna / ⑩ Belgium - Business Archives of the Officina Plantiniana (2001), Museum Plantin-Moretus, Antwerpen / ⑪ Benin - Colonial archives (1997), National Archives, Porto Novo / ⑫ China - Traditional Music Sound Archives (1997), Music Research Institute, Chinese Academy of Arts, Beijing / ⑬ China - Records of the Qing's Grand Secretariat (1999), First Historical Archives of China, Palace Museum, Beijing / ⑭ Denmark - Archives of the Danish overseas trading companies (1997), Danish National Archives, Copenhagen / ⑮ Denmark - The Linné Collection (1997), Danish National Library of Sciences and Medicine, Copenhagen / ⑯ Denmark - Manuscripts and correspondence of Hans Christian Andersen (1997), Manuscript Department, Royal Library, Copenhagen / ⑰ Denmark - The Søren Kierkegaard Archives (1997), Manuscript Department, Royal Library, Copenhagen / ⑱ Egypt - The Memory of the Suez Canal (1997), Cultural Bureau, Egyptian Embassy, Paris / ⑲ Ethiopia - Treasures from National Archives and Library Organizations (1997), National Archives and Library, Addis Ababa / ⑳ Finland - A.E. Nordenskiöld Collection (1997), University Library, Helsinki / ㉑ Germany - Early cylinder recordings of the world's musical traditions (1893-1952) in the Berlin Phonogramm-Archiv (1999), Phonogrammarchiv, Museum of Ethnology, Berlin / ㉒ Germany - Ludwig van Beethoven -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2001), State Library, Berlin / ㉓ Germany - The literary estate of Goethe (2001), Goethe and Schiller Archives, Weimar / ㉔ Germany - 42-line Gutenberg Bible (2001), State and University Library of Lower Saxony, Göttingen / ㉕ Germany - Metropolis (2001), Friedrich Wilhelm Murnau Foundation, Wiesbaden / ㉖ Hungary - Kalman Tihanyi's 1926 Patent Application "Radioskop" (2001), National Archives of Hungary, Budapest / ㉗ India - The I.A.S. Tamil Medical Manuscript Collection (1997), Institute of Asian Studies, Tamil Nadu / ㉘ Republic of Korea - The Hunmin Chongum manuscript (1997), Kansong Art Museum, Seoul / ㉙ Republic of Korea -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1997), Chongjoksan Sagobon, Seoul / ㉚ Republic of Korea -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2001), Gyujanggak Librar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㉛ Republic of Korea - Buljo jikji simche yojeol (vol. II), the second volume of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Zen Teachings" (2001),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 ㉜ Latvia - Dainu skapis - Cabinet of Folksongs (2001), Archives of Latvian Folklore, Riga / ㉝ Malaysia - Correspondence of the late Sultan of Kedah (1882-1943) (2001), National Archives of Malaysia, Alor Setar / ㉞ Malaysia - Hikayat Hang Tuah (2001), National Library of Malaysia, Kuala Lumpur / ㉟ Malaysia - Sejarah Melayu (the Malay Annals) (2001),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Kuala Lumpur / ㊱ Mauritius - Records of the French Occupation of Mauritius (1997), Mauritius Archives, Petite Rivière, Port Louis / ㊲ Mexico - Collection of Mexican Codices (1997), National Library of Anthropology and History, Mexico City / ㊳ Mexico - Codices from the Oaxaca Valley (1997), National Archives,

---

Mexico City / 🇲🇽 Mexico - Codex Techaloyan from Cuajimalpaz (1997), National Archives, Mexico City / 🇳🇿 New Zealand - The Treaty of Waitangi (1997), National Archives, Wellington / 🇳🇿 New Zealand - The 1893 Women's Suffrage Petition (1997), National Archives, Wellington / 🇳🇴 Norway - The Leprosy Archives of Bergen (2001), City Archives and Regional State Archives of Bergen, Bergen / 🇳🇴 Norway - Henrick Ibsen : A Doll House (2001), National Library of Norway, Oslo / 🇵🇰 Pakistan - Jinnah Papers (1999), National Archives, Islamabad / 🇵🇭 Philippines - Philippine Paleographs (Hanunoo, Buid, Tagbanua and Pala'wan) (1999), National Museum, Manila / 🇵🇱 Poland - Nicolaus Copernicus' masterpiece "De revolutionibus libri sex" (1999), Jagiellonian Library, Jagiellonian University, Cracow / 🇵🇱 Poland - Warsaw Ghetto Archives (Emanuel Ringelblum Archives) (1999), Jewish Historical Research Institute, Warsaw / 🇵🇱 Poland - The Masterpieces of Fryderyk Chopin (1999), The Fryderyk Chopin Society, Warsaw / 🇷🇺 Russian Federation - Archangel Gospel of 1092 (1997), Russian State Library, Moscow / 🇷🇺 Russian Federation - Khitrovo Gospel (1997), Russian State Library, Moscow / 🇷🇺 Russian Federation - Slavonic publications in Cyrillic script of the 15th century (1997), Russian State Library, Moscow / 🇷🇺 Russian Federation - Newspaper collections (1997), Russian State Library, Moscow / 🇷🇺 Russian Federation - Maps of the Russian empire and its collection of the 18th century (1997), Russian State Library, Moscow / 🇷🇺 Russian Federation - Russian posters of the end of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1997), Russian State Library, Moscow / 🇷🇺 Russian Federation - The Historical Collections (1889-1955) of St. Petersburg Phonogram Archives (2001), Institute of Russian Literature and Russian Academy of Sciences, St. Petersburg / 🇸🇳 Senegal - 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 AOF (1997), National Archives, Dakar / 🇸🇰 Slovakia - Illuminated Codices from the Library of the Bratislava Chapter House (1997), National Archives, Bratislava / 🇸🇰 Slovakia - Basagic Collection of Islamic Manuscripts (1997), University Library, Bratislava / 🇿🇦 South Africa - The Bleek collection (1997), University of Cape Town, South African Library, Cape Town / 🇹🇿 Tanzania - German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s (1997), National Archives, Dar Es Salam / 🇹🇹 Trinidad and Tobago - The Derek Walcott Collection (1997), The Main Library, University of West Indies, St. Augustine / 🇹🇹 Trinidad and Tobago - The Eric Williams Collection(1999), The Main Library, University of West Indies, St. Augustine / 🇹🇷 Turkey - The Hittite cuneiform tablets from Bogazkoy (2001), Archaeological Museums of Istanbul and Anatolian Civilisations Museum of Ankara / 🇹🇷 Turkey - Kandilli Observatory and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Manuscripts (2001), Bogaziçi University, Kandilli Observatory and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Istanbul / 🇺🇿 Uzbekistan - Holy Koran Mushaf of Othman (1997), The Muslim Board of Uzbekistan, Tashkent / 🇺🇿 Uzbekistan - The Collection of the Al-Biruni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1997), Academy of Sciences, Tashkent / 🇻🇪 Venezuela - Escritos del liberator (1997), National Archives, Caracas / 🇻🇪 Venezuela - Collection of Latinamerican photographies of the 19th Century (1997), National Library, Caracas.

[http://portal.unesco.org/ci/ev.php?URL\\_ID=1678&URL\\_DO=DO\\_TOPIC&URL\\_SECTION=201&reload=1046396871](http://portal.unesco.org/ci/ev.php?URL_ID=1678&URL_DO=DO_TOPIC&URL_SECTION=201&reload=1046396871) (검색일 2003년 2월 28일).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대 국왕의 기록(현대적 의미의 통치사료)이 이렇듯 잘 정리되고 보존된 예는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대 한국의 통치 사료가 유실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sup>22)</sup>

그렇다면 현대 사료의 보존과 축적에 관련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록과 승정 원일기는 어떤 자료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창건자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며 총 1,893권 888책(일제 때 편찬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제외)으로 되어 있어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본래 실록은 중국 남북조 시대인 梁나라(539년 남제의 장군 소연이 건국한 나라) 때 처음 편찬했으며 당 이후 황제(사후에 繼嗣한 군주가 사관에서 그 실록의 수찬을 명했고 이것이 정례화되었다.<sup>23)</sup>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다.<sup>24)</sup>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은 태조가 죽은 이듬해인 1409년(태종 9년)에 태종이 하륜 등에게 『태조실록』 편찬을 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

22) 그렇다고 현대의 모든 통치사료가 유실되어 있지는 않으며, 만약 현재부터 보존에 주력한다면 유실된 시기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긴 시기가 아닌 50년 여 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3) 기록상으로는 周興嗣의 梁皇帝實錄二卷, 謝昊의 梁皇帝實錄五卷 등이 편찬되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중국 최초의 것은 韓愈의 唐 順宗實錄 5卷과 錢若水의 宋 太宗實錄 80권 중 20권이다. 김염자, 「당대 사관의 역사인식: 한유의 사론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80집 (1978년 12월); 배현숙 (편역), 『중국자료탐색방법』, 민족문화사 (1994), 221쪽; 고병익, 「동아 제국의 실록」, 민족문화추진회 (편), 『『조선왕조실록』과 고전국역사업』, 조선왕조실록 원역 기념 학술회의 (1994년 3월 25일), 6쪽. 중국의 사관제도는 춘추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연원이 더 오래되었다. 李宗侗, 「중국 고대의 사관제도」, 박한제 (역),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상』, 창작과 비평사(1985), 126쪽.

24) 따라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은 아니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방식이지만 중국의 어느 왕조보다 더 완벽하고 엄밀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편찬되고 보존되었으므로 우리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작업을 맡았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던 전문관료였다.<sup>25)</sup> 실록의 편찬은 다음 국왕이 즉위한 후 실록청을 개설하고 관계관을 배치하면서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실록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조정과 각 지방 관청의 보고서 등을 날짜별로 정리한 춘추관 시정기, 전왕 재위시의 사관들이 작성해 둔 史草,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 정부 주요기관의 공식 기록, 개인의 일기, 상소문, 문집, 야사 등이었다. 특히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 등의 사관들이 매일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왕과 신하들이 크고 작은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그 잘잘못 및 인물과 사건에 대한 비평[史評], 그리고 기밀사무 등을 直筆한 기록이 바로 사초였다. 조선시대에는 사법(史法)이 매우 엄하여 사관이외에는 심지어 군주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사초를 볼 수가 없었으므로 기록의 진실성과 신빙성, 사관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sup>26)</sup> 이는 후세에 정확한 역사 기록을 전하기 위해서였으며, 현대 통치사료 편집과정에서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다.

선왕의 실록편찬사업이 끝나면 사초와 시정기 등의 자료와 正草(최종 원고) 이전의 初草와 中草 등은 모두 洗草하거나 태웠다.<sup>27)</sup> 이렇게 사료를 없앴기 때문에

25) 韓祐勲, 「朝鮮前期의 史官과 實錄編纂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 제66호 (1988년 12월), 77~130쪽; 鄭求福, 「朝鮮初期의 春秋館 實錄編纂」, 『撰寫許善道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284~304쪽; 오항녕, 「史官制度 成立史의 제문제」, 『泰東古典研究』 第14輯 (1997년 12월), 3~35쪽.

26) 그렇지만 정권의 교체나 정파의 세력변화에 따라 실록을 아예 고쳐 쓰는 경우도 있었다. 군주계승에 문제가 있는 군주일수록 실록 개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수의 대표적인 것이 『선조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등이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처음 편찬했다. 그런데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고쳐 쓰기 시작하여 1657년(효종 8)에 완성했는데 본래의 『선조실록』과 대비하여 『선조수정실록』이라고 부른다. 『현종개수실록』과 『경종수정실록』 등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 실록들을 원본과 비교해 보면 사안에 따라 각 정파의 정치적 입장이나 역사관 등의 차이가 드러난다. 따라서 실록은 객관적인 자료의 보고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고병익, 「동아제국의 실록」, 민족문화추진회 (편), 『조선왕조실록』과 고전국역사업, 조선왕조실록 원역 기념 학술회의, 1994년 3월 25일, 22쪽.

27) 이러한 세초는 부족한 용지 재활용 목적 외에 정초본 이외의 다른 기록이 남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시비와 논란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유독 광해군 일기의 경우는 중초본이 남아 있다. 太白山本 1,893권 888책의 『朝鮮王朝實錄』을 총 48책으로 축쇄 영인하여 1955년부터

실록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 있다. 정초본은 특별히 설치한 史庫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고의 실록들이 병화에 소실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채출간하거나 보수하여 20세기초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전하여 내려왔다.<sup>28)</sup> 정족산,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1910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관할의 종친부 건물에 보관했다가 1930년 경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다.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일본이 東京대학으로 반출하여 갔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불타 현재 27책만 남아 있다. 적상산본은 구황궁 장서각<sup>29)</sup>에 소장되어 있다가 광복 후 상당 부분 도난당했고 나머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족

1958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하였으며 中草本 광해군일기를 해서로 등사하고 삭제된 부분을 복원하여 『光海君日記』라는 제목으로 3책을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역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하였다.

- 28) 조선 초기 태조·정종·태종의 실록은 각각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한양의 춘추관사고에 1부는 충주사고에 보관하였다. 1455년(세종 27년)에 다시 2부를 더 등사하여 새로 설치한 전주와 성주의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세종실록』 이후에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활자로 인쇄하여 위의 4곳의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동아시아 어느 나라의 실록도 근세 이전에 인쇄된 일이 없어서 모두 필사본으로만 전승되었는데 조선은 이를 인쇄했다는 것은 인쇄술의 발전 덕택이었지만 3~4부 밖에 인쇄하지 않으면서도 거창하게 인쇄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병익, 「동아제국의 실록」, 민족문화추진회 (편), 『조선왕조실록』과 고전국역사업, 조선왕조실록완역 기념 학술회의(1994년 3월 25일), 23쪽. 임진왜란 때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의 실록은 불타 없어지고 전주사고의 실록만이 내장산으로 옮겨짐으로써 보존될 수 있었다. 전주사고의 실록은 왜란이 진행되는 동안 해주, 강화도, 묘향산 등을 전전해야 했다. 왜란이 끝난 뒤 정부는 다시 실록 출판에 착수하여 1606년(선조 39년)에 실록 3부를 다시 출판해 최종 교정본과 전주사고의 원본까지 합쳐 모두 5부를 갖추었다. 그 가운데 1부는 이전처럼 한양의 춘추관에 두고, 다른 4부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깊은 산중인 강화도 마니산, 경상도 태백산, 평안도 묘향산, 강원도 오대산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하였다. 춘추관, 태백산, 묘향산 사고에는 선조 때 새로 출판한 실록을, 마니산 사고에는 전주사고에 있던 원본 실록을, 오대산 사고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다. 그러나 춘추관 사고의 실록은 1624년(인조 2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 때 불타 없어지고, 마니산 사고의 실록은 병자호란 때 상당 부분 파손되었다. 인조 이후의 역대 실록은 강화도 정족산(1678년[숙종 4년]에 사고 설치),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북방이 불안하여 1614년[광해군 6년] 실록전을 세우고 묘향산의 실록을 1633년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1641년[인조 19년] 선원각을 세워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을 보관하게 되었다), 태백산,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車勇杰, 「實錄·史官·史庫에 對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편), 『史庫址調查報告書』, 국사편찬위원회(1986), 1~33쪽.
- 29) 1911년 설립된 장서각 자료는 현재 82,749책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내로 이전되었다. 물론 실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본과 태백산본은 광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함께 소장되어 있다가 1984년 정족산본 1,181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태백산본 848책은 부산 정부기록보존소에 분리 소장되었다.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에 보관된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업본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 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세계적 기록유산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세월에 걸친 실록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大清歷朝實錄』도 296년 간에 걸친 실록에 불과하며 분량 면에서도 우리의 『조선왕조실록』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은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세계적인 역사서이다. 일본의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실록 『三代實錄』은 내용 면에서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월남 阮朝의 『大南寔錄』은 548권으로 편성되었다.<sup>30)</sup> 중국의 『皇明實錄』은 2,964권으로 된 巨帙이나 권수만 많을 뿐이지 기록내용은 소략하다. 『조선왕조실록』이 총 6,400만 자인데 대해 『황명실록』은 총 1,600만 자에 불과하다. 셋째로,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전서적 실록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학예, 종교 생활로부터 천문, 지리, 음악, 과학적 사실이나 자연재해나 천문현상과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사서요,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기록이 담겨져 있는 민족문화서인 것이다. 넷째, 활자로 인쇄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인쇄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서인 것이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를 가장 앞서 실용한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활자개량에 힘쓰고, 각종 도서를 간행해 온 전통이 있었다. 다섯째, 조선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온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힘든 일이다. 끝으로, 조선왕조실록은 일본,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본자료이기도 하다. 물론 실록에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왕실 중심의 서술방식과 명분론적 시각, 黨論에 의한 曲筆의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편년체이기 때문에 사료가 분산되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라면 한계이다.<sup>31)</sup>

30) ‘實’자가 당시 명나라 命帝 황후 胡씨의 이름이었음으로 寔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고병익, 「동아제국의 실록」, 민족문화추진회 (편), 『「조선왕조실록」과 고전국역사업』, 조선왕조실록 완역 기념 학술회의(1994년 3월 25일), 8~11쪽.

『承政院日記』는 1623년(인조 1년)부터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이후 동일한 편제로 표제가 바뀐 것까지 포함하면 1910년[융희 4년]으로 총 3,243책<sup>32)</sup>까지의 왕명 출납, 제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을 기록한 일기로, 현존하는 한국 최대의 역사기록물이다.<sup>33)</sup> 1999년 4년 9일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으며 원본은 필사본으로 대개 초서를 사용하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승정원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기구로 조선 정종 2년(1400년) 4월에 창설되었다. 고려시대에는 中樞院에서 그 일을 맡고 있었으나 정종 때 독립기관으로 발족하여 태종 원년(1401년) 7월에 잠시 없어지기도 하였지만 태종 5년(1405년) 1월에 다시 설치되어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때 承宣院으로 개칭될 때까지 490년간 존속했다. 조선 건국 초인 1400년 정종 2년 승정원 설립부터 『승정원일기』가 정리되었다고 하나 朝鮮前期分은 임진왜란과 李适의 난 등으로 모두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는 국정 전반에 걸친 매일 매일의 일기를 날짜순으로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자세한 기본사료이다. 당시에 정책에 참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승정원일기』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았으므로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라 할 수 있다.<sup>34)</sup> 『조선왕조실록』은 여러 기록들을 선별하여 편찬된 자료이며 그나마 인조 이후에는 그 내용이 부실하여 『승정원일기』가 없다면 그 시대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종 이후에는 실록이 일제에 의해 편찬되었으므로 『승정원일기』가 우리 근대사 분야의 공식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종과 순종 시

31) 이성무,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연구』, 민족문화추진회 (편), 『「조선왕조실록」과 고전국역사업』, 조선왕조실록 원역 기념 학술회의(1994년 3월 25일), 36쪽. 또한 인물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packed 있어서 조선왕조는 매일 정쟁만 일삼은 것처럼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조선시대 사립의 여론정치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조선시대 관료들은 청백리의 높은 기준을 요구받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32) 1623년부터 승정원이 폐지되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의 『승정원일기』 3,045책과 갑오경장 이후의 『승선원일기 承宣院日記』 4책, 『궁내부일기 宮內府日記』 5책, 『비서감일기 秘書監日記』 41책, 『비서원일기 秘書院日記』 115책, 『규장각일기 奎章閣日記』 3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623년(인조 1년) 3월부터 1894년(고종 31년) 6월까지 272년간 승정원이었다가 승선원으로 개칭되었으며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그 기능이 이어졌다.

33)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41.2cm×29.4cm이다.

34) 그렇다면 현대 대통령이나 최고 결정자가 참조할 자료는 무엇일까? 겨우 법전이나 판례를 뒤적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대에 국한한다면 『승정원일기』의 정치사적 가치는 가히 독보적이다.<sup>35)</sup> 그리고 여기에는 비록 왕 중심이기는 하지만 정치, 경제, 외교, 역사, 문화, 법제, 사회, 군사, 자연 현상, 인사, 국왕과 관료의 동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학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이며 보고라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啓稟, 傳旨, 請牌, 請推, 呈辭, 上疏, 宣諭, 傳教 등이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에 소속된 정품의 주서가 왕의 국정 처리 내용을 현장에서 모두 기록했다가 매달 정리해 왕의 검토를 받은 뒤에 보관하였다. 이 책의 기재 방식을 보면 한 달을 기준으로 책머리에 월간 경연상황, 內殿의 동향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승정원의 관리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상태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승정원의 업무현황, 왕 및 내전의 문안, 승정원의 人事關係 등의 내용을 실었다. 『승정원일기』는 일기식으로 한 달에 1책씩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후기로 올수록 내용이 많아져 한 달에 2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눈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왕에 대한 신하들의 발언과 왕이 내리는 명령은 모두 승정원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왕의 명령은 물론 經筵을 비롯한 군신간의 논의, 왕이

35) 고종 31년 갑오경장 이후의 일기 내용은 일제에 의한 내정 간섭기 궁중기록이다. 조선왕(황제)의 결제를 요하는 사건과 기타 궁중의 비화를 기록하였으므로 근대사 연구의 1차 기본 사료가 된다. 또한 17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일기로 300년간의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문학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288년간 매일의 날씨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서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날자는 60갑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나 『승정원 일기』는 60갑자와 수시력역법의 일자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 역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사회 내부로부터 자생적인 천주교 수용이 민중들 사이에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등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승정원일기』 원본은 보존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탈초본인 『영인본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가 141책으로 1960~1977년 간행)가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철종2년(1851)부터 융희[순종]4년(1910)까지의 일기 필사본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고, 향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0년부터 10년을 계획으로 원문 전산화와 인터넷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국편 탈초 영인본 141책 중에서 28책까지(인조-숙종) 전산화가 되었고 2003년에 10책을 또 진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산화 사업은 국학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국역은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94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고종대의 승정원일기와 인조대 약간을 번역하였다. 고종대의 것은 2001년말 현재 1893년 1월분 156권까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되었으며 순종대의 것은 1994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색인 포함 전7권으로 완역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완역, cd-rom화와 함께 『승정원일기』 국역은 국학의 대중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워낙 방대하여 그렇게 단시일 내에 완성될 가능성은 적다.

참여한 국가 의식에 대한 모든 내용이 실려 있다. 예를 들면 경연에 대해서는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논의 내용을 대화체 그대로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칙과 달리 간략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 최대의 기밀 기록인 동시에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과 같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료이며,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록보다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원본 1부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시 세계 최대 및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고려된 것이다. 현대에도 무수한 비밀 기록이 있다. 그러나 ‘기록 당시의 취사선택’과 ‘士禍나 당쟁 시에 삭제된 부분’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가필이나 왜곡이 없었기에 『승정원일기』처럼 거의 완벽하게 보존·공개된 것은 없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조선은 왕조의 비밀기록을 거의 모두 공개했던 지구상 유일의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중국 25사』(3,386책, 약 4,000만 자) 및 『조선왕조실록』(888책, 6,400만 자)보다 더 방대한 세계 최대의 연대 기록물(총 3,243책, 글자 수 2억4천250만 자)이며, 『승정원 일기』가 당시의 왕실의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조선시대 1차 사료라면 『조선왕조실록』은 국왕 사후 사관들에 의해 편집된 2차 자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사료와 사서 양분법에 의하면 『승정원 일기』는 사료이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사서라 할 것이다. 『승정원일기』에서는 공정의 그 날 그 날의 자취가 어떤 선별적인 2차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실록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sup>36)</sup> 그렇지만 正史로서의 실록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거질의 편년체 정사이며 한국학 연구의 보고이다.<sup>37)</sup> 『승정원일기』가 자세하기는 하지만 국왕주변의 일을 중심으로 기술한데 비해 『조선왕조실록』은 국정전반에 걸친 일을 史評까지 붙여 놓은 관찬 사서<sup>38)</sup>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 면에서는 『승정원일기』를 능가하고

36) 신석호, 「승정원일기 해제; 국역 승정원일기(순종 부분)을 내면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승정원일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4), 2쪽.

37) 이성무, 앞의 글, 26쪽.

38) 이성무, 앞의 주, 37쪽.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 때에는 이들 사료 외에도 『비변사등록』(광해군 9년[1617년] - 고종 29년[1892년]까지의 것이 전함)<sup>39)</sup> 『각사등록』(선조 10년[1577]부터 1910년까지 각 지방관아와 중앙과의 往復文書와 謄錄類)<sup>40)</sup> 규장각에서 날마다 시정에 관한 것을 기록한 『일성록』(영조 36년[1760년] - 융희[순종] 4년[1910년]까지의 것이 전함)<sup>41)</sup>을 비롯해 정부와 왕실의 문서, 그리고 개인문집, 고문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었으며 보존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때보다 더 무수한 문서들이 생산되고 기안·회람되고 있으며, 당시 왕에 비교되는 존재인 대통령의 경우 보다 더 바쁜 일정으로 국내외 여러 지역을 돌며 국사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통치사료의 경우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퇴임 후 이를 정리하지 않아 한국정치사 연구에 있어 난점을 제공하고 있는 지 오래이다. 이러한 현황이 이 글을 쓰게된 동기이며, 이는 다음 단락에서 상술될 것이다.

또한 정조 8년(1784년) 왕명으로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정조 12년(1788년)에 완성된 『同文彙考』에 주목해야 한다. 『同文彙考』는 初編 129권 60책과 續編 36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편은 인조 때부터 1786년까지 조선과 중국 사이의 문서

39) 『備邊司謄錄』은 임란 이후 최고 통치 기관인 비변사의 일기이다. 군국사무를 총리하던 회의기관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광해군 9년부터 고종 29년까지 12대 276년간 보존된 273책을 초서를 楷書로 바꾸어 1959년부터 1960년 사이에 28책으로 영인간행하였다. 또한 『國譯 備邊司謄錄』 24책은 원본 총 273책 중 제1책(광해군 9년 정월)·제75책(경종 4년 6월)까지의 것을 국역하여 1989년부터 1999년 사이에 간행하였다. 경종 4년 7월 이후 분부터는 간행하지 않고 전산화하는 방침을 채택하여 원본 제76책(경종 4년 7월)부터 제82책(영조 3년 12월)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기 간행 원본 24책의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40) 조선 중·후기 각 관청의 문서인 등록류 첩이다. 『各司謄錄』 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981년부터 1999년까지 92책으로 楷書로 脫草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간행하였다. 1999년부터 종래의 인쇄·간행방식을 ‘전산화’로 바꾸어 기간행 각사등록 중 勅使謄錄·朝賀謄錄·典客 司日記 등을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41)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쓴 일기에서 비롯되었는데 1781년(정조 5년) 그의 뜻에 따라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재편되었다. 제목에 나타나듯이 날마다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나 국정운영에 대한 참고자료와 역사 서술로서의 성격도 강했다. 규장각 검사관이 마련한 초본을 바탕으로 규장각의 신하들이 작성했으며, 왕의 검토를 받은 후에 보관하였다. 국보 153호임. 서울대학교 도서관(규장각)에서 86책으로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영인간행하였다. 일성록에 대해서는 오항녕, 「실록에서 일성록으로: 제도와 역사관의 전환」, 한국역사연구회·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주최 발표회 주제: 한국역사기록의 관리와 발전방안, 2000년 10월 21일 참조.

인 原編과 別編, 연행사들의 문건록인 補編, 그리고 일본과의 문서인 附編으로 나뉘어 있다. 속편은 초편이 완성된 이후 매3년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사대·교린 문서들을 보완하려는 것인데, 1787년부터 고종 18년(1881년)까지 90여 년에 걸친 시기를 포괄한다.<sup>42)</sup> 동문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를 동일한 문화권으로 상정해 이들 국가(청과 일본)와 주고받은 조선후기의 대외관계 문서를 집대성한 것이다. 다만 속편에는 ‘洋船情形’이라 하여 고종 때부터 연안에 출몰한 서양 선박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고 있어<sup>43)</sup> 19세기 후반부터 서양과의 관계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외교 내용에 따라 항목을 구성한 뒤, 항목별로 관련 문서를 시기 순으로 정리했다. 우리도 외교사료 편찬의 전통이 있었던 문화민족이었다.<sup>44)</sup> 이외에도 對淸·對日本 관계를 다룬 『放事撮要』·『通文館志』·『增正交隣志』 등의 서적도 있다. 그런데 『同文彙考』의 방대한 규모와 교섭문서의 原案을 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다른 類書보다 탁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동문회고』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책으로 조선 후기 대외관계를 살피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 2. 기록보존전통의 단절: 현대사 분야

정권 수립과 유지에 있어 정통성이 확고하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를 겪어서 인지, 아니면 戰禍와 정변을 경험해서 인지 일제시대로 인해 자료 보존 전통에 단절을 강요당해서인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최고위층에 관련된 자료는 유실되고 미정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근현대 한국정치사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료빈곤을 타하는 분위기가 있다.<sup>45)</sup> 예를 들어 일제시대 연구는 일

42) 韓國史料叢書 제24편으로 國史編纂委員會에서 1978년 영인·간행하였다.

43) 제61책 原編에 ‘洋船情形’으로 淸에 대한 洋情報告 항목이 나온다. 洋船情形은 開港 이전의 서양과의 접촉과 그 情形에 관하여 中國에 보낸 奏·咨 등의 문서를 수록한 것으로 1866년-1879년의 것이다. 이 시기의 대외 접촉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44) 김용구, 「새로운 외교사 연구를 위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소식』 제104호 (2002년 10월 30일), 3쪽. 미국이 편집한 외교문서 공간자료집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집의 19세기 것은 미국 의회가 편집했으며, 20세기 들어와서 국무부가 펴냈다.

45) 신복룡 교수는 3·1운동의 연구사를 다룬 글에서 “우리 민족은 문화적 유산이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헌의 기록·보존·전승에 남달리 소루(疏漏)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고대사와 현대사의 연

본 자료를 보아야 하며, 미군정시대 연구는 미국자료를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연구하면서 국내의 작전 명령과 회고록 녹취문, 증언록 보다는 미국에 보관된 자료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과연 국내 자료는 별 볼 일이 없는가?<sup>46)</sup>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기록보존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다. 따라서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와 같은 자료의 생산을 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자료 보존의 전통은 계승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할 사료의 증거능력을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역사연구에서는 필수적인데, 현대정치사의 주요 사료(archival sources)는 생산국을 기준으로 한국 사료와 미국 사료, 일본 사료, 러시아 사료, 중국 사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탈냉전기 현대사 연구 경향은 다국사료교차분석(multi-archival studies)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으므로<sup>47)</sup> 복수 국가의 문서고(archive)를 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적 포스트모던적 접근과도 일맥상통한다.<sup>48)</sup> 그런데 한국정치 연구자가 한국문서고를 뒤지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어색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료의 경우 의례 ‘미개방일 것이다’는 선입견이 지배적이어서 ‘검색하지도 않고 미국의 문서고부터 뒤지는 경향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료 개방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어 우리 사료에 의존한 참신하고 1차적인 연구가 산출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구가 다른 나라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황을 개탄하였다. 신복룡, 「3·1운동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신복룡, 『한국정치사』 제4권, 박영사 (2003), 438-439쪽. 그러나 조선시대사 연구에 관한 한 우리의 문헌 보존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도 부각시킬 수 있다.

- 46) 미국의 외교문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외무부가 30년 가량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대한민국의 교문서철」 마이크로 필름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 간행된 국내의 신문·잡지도 비록 의도적인 것이라 사료는 아니지만 훌륭한 사서-준1차 자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47)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경제와 사회』 통권 46호 (2000년 여름), 25쪽.
- 48) 예를 들어 한국전쟁의 경우 北韓·南韓·美國·蘇聯·中國 등 관련국 모두의 多國資料를 교차비교하는 방법이 후기수정주의적 조류의 하나인 다국사료교차비교분석 방법이다. 韓國戰爭은 어느 하나의 이념 스펙트럼에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라는 것이 최근 미·러·중 등에서 公開된 아카이브(文書)가 말해주는 진실이므로 사실규명을 위해서라도 다국사료교차분석의 방법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한국현대정치사 핵심자료로서 대한민국 통치사료의 현황

#### 1. 현대정치사의 핵심자료: 통치사료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기록보존 유산과 맥이 이어질 수 있는 현대한국정치사분야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한때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편년체 관찬 사서 편찬의 전통을 일제시대에 부분까지 복원하여 이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라는 제목으로 1966년~1978년까지 13책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되었다. 그리고 해방후의 역사도 『資料大韓民國史』라는 제목으로 1968년~1974년(1945년~1948년 8월 15일까지 포괄, 전7권)에 간행되었다가, 1998년에 속간되기 시작하여 2001년 말 현재 1950년 6월 24일까지의 시기를 포괄하는 17권이 간행되었다. 지금은 1950년의 6.25전쟁 이후의 시기가 편집되고 있는데 2004년에 속간될 예정이다. 주로 신문철로 간행되다가 최근의 기획에서는 공문서·사문서와 국외자료까지 포괄하려 하고 있다. 1950년 6월까지의 자료는 전산화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을 웹 서비스하고 있으며 cd-rom으로도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현대사의 편년체 사서가 학계에서 그 이전의 사료와 같은 반열에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현대는 전통시대와 같이 하나의 책에 포괄된 정사를 만들기가 어려운 시대이며 다양한 사료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 따라서 통치사료가 하나의 정사 안에 포괄되기보다는 다양한 문서들을 보존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서로 이루어진 현대의 통치사료는 매우 중요하다. 역사연구의 성패는 사료에서 거의 결정되므로 정치사연구에서 통치사료의 검색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며 통치사료 없이 연구하는 것은 피상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최근 김대중 정부의 통치사료 이관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정치사가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관심이 가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 2. 통치사료의 현황

대한민국의 통치사료보관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는 미국의 기록보존기관인 국립문서보관소(내쇼날아카이브: the National Archives) 체제와 비슷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열람해 보면 그 보존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경무대 문서는 ‘대통령비서실 문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진 자료와 외국인사들의 접견에 관한 문서, 지시사항 몇 건 이외에 중요한 회의의 기록이나 비밀 문서의 경우 한 건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의 경우 비록 대통령 재임 이전의 문서가 주류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개인 자료인 『우남사료』(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 관리)<sup>49)</sup>가 활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 문서는 그의 사거

49) 이승만 집권 시대 한국사료의 중심은 역시 ‘우남사료, 1903-1965’이다. 김동현, 「이승만 사료의 비밀」, 『월간조선』(1992년 1월), 516~535쪽. 이 중 대통령 취임 이전의 사료는 『이화장 소장 우남이승만문서 東文篇』, 전18권,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1998); *The Syngman Rhee Telegram, in 4 volumes, Yonsei University, 2000* 등으로 공간되었다. 또한 해방 직후 이승만의 정치고문인 올리버(Robert T. Oliver)와 교환한 편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이정식 교수를 통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올리버문서철; Robert T. Oliver Papers; 임병직의 서한철 포함)되어 대부분이 『대한민국사자료집: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28~37, 국사편찬위원회(1996~1997)로 공간되었다(이 편지의 일부는 1990년에 이인수 교수가 미국에서 올리버에게 1천장 넘는 양을 돌려 받았다. 김동현, 「이승만 사료의 비밀」, 519쪽. 한편 이때 빠진 자료는 이정식 교수가 연구 목적으로 빌려간 것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는 두 부분이 모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 보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소위 ‘통치사료’가 중요하다. 이 자료 중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주로 연설문집, 방명록, 결재문서 등 자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사진 자료와 외국인사들의 접견에 관한 문서, 지시사항 몇 건 이외에 중요한 회의의 기록이나 비밀 문서의 경우 한 건도 없다. 회의록 등 중요한 것은 대부분 유출되었으며 동란을 겪어서 그런지 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경무대에서 사거로 이관된 영문자료 중 대부분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로 최근 햇볕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1948-1960*인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경무대로부터 이화장에 옮긴 것을 우남의 양자 이인수 교수가 계속 소장(이화장문서)하고 있다가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로 넘긴 것이다. 총 15만 장 정도 중 현재 일부가 정리되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우남사료실’(The Syngman Rhee Materials Room; 2001년 5월 개관)에 공개되어 있다. 이승만 시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료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문서의 절반 정도가 목록화되었다. Young Ick Lew and Sangchul Cha, eds.,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1948-1960: A Catalogue*,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이후 중요한 것은 소실되거나 개인 소장으로 돌려 졌다.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박정희의 편지를 발굴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있는 것이다.<sup>50)</sup> 전두환,<sup>51)</sup>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문서는 역시 퇴임 후 개인 사저로 이관되었으며 중요하지 않은 문서 일부만이 정부기록보존소로 남아있다. 가장 힘있는 기관인 대통령 문서를 행정자치부의 일개 산하 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법령을 들이대며 수집할 능력은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므로 대통령의 통치사료는 별도의 기관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서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퍼지자 1987년 대통령기록이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4년에 제정된 「정부공문서규정」에 다음과 같은 제39조 1항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결제를 받은 문서 등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의 결제를 받은 문서(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포함한다)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sup>52)</sup>에도 불구하고

University, 2002, p. 3. 이화장에서 이관된 문서 중 사문서를 제외한 경무대를 생산기관으로 한 문서는 모두 대통령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관에 대해 한 정부기록보존소 직원은 “전문관리기관이 아닌 곳에 보관되어 있는 방치 상태”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이 기록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건홍, 「대통령기록 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연구』 제4호(2001년 10월), 23쪽.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사적 기관에서 정부의 협조를 얻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우남사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문서, 제네바 정치회담 관련 문서, 아시아 반공연맹 회의 관련 문서 등으로 이루어진 경무대 대외비(confidential) 문서 외에 내각문서(Cabinet Files), 공보관계문서(Public Relations Files), 기타파일(Miscellaneous Files), 한국주둔 유엔기구 문서(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on Korea Files) 외에는 현지공관문서(Embassy and Legation Files)가 주류를 이룬다. 경무대 문서 외에 원래 기밀로 분류되었던 문서는 없다. 따라서 기밀 문서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 50) 예를 들어 본 연구자는 미국 National Archives RG 59, No. 25, Pol Chi Com 파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1970년 4월 20일자 극비 국문 편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외무부 등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1980년 12월 1일 지미 카터는 전두환에게 김대중을 사형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 이 편지 또한 남아 있지 않다. 『중앙일보』, 2000년 1월 12일.
- 51) 당시 수석비서관은 정권 퇴임 후 “각종 말씀 자료와 수석비서관 회의록, 수석들이 보관한 문서 등을 연희관 사저로 옮겼다”고 말했다. 박건홍, 앞의 글, 9쪽.
- 52) 제32조는 “문서는 당해 문서가 처리-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이며 제33조 3항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영구·준영구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영구·준영구인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장과 협의하여 문서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의거하여 이관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종 결재문서만 이관하면 되는 것으로 합법화되어 결재되지 않은 일반문서나 비망록 등 비공식 기록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적 유출을 정당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 된 후 최종서류라고 할 수 있는 결재-보고 문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방적인 정책결과물만 알 수 있을 뿐 정치과정의 핵심인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 등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실명제와 같은 중요한 정책 서류마저 청와대 문서에서는 8쪽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sup>53)</sup>

이에 정부기록보존소 직원의 다음과 같은 통계를 인용할 수 있다.

<표 2> 2000년 11월 4일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역대 대통령 문서 보존 현황<sup>54)</sup>

	계	생산기관별	
		대통령비서실	기타기관
계	54,891	15,848	39,043
이승만	3,847	715	3,132
박정희	26,017	10,410	15,607
최규하	886	125	761
전두환	14,181	4,337	9,844
노태우	3,826	34	3,792
김영삼	4,206	227	3,979
김대중	238	0	238
허정	157	0	157
윤보선	1,512	0	1,512
박충훈	21	0	21

53) 『동아일보』, 1998년 4월 29일.

54) 박건홍, 앞의 글, 8쪽. 박충훈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했다. 그런데 10월 현재 정부기록보존소(<http://www.archives.go.kr/>)에서 ‘대통령’이라는 검색어로 일반 시청각자료 색인을 한 결과 1988년~1991년간의 공개적인 지시문, 분부사항 등만이 172건 검색되었다. 생산기관 면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보관되

<표 3> 2001년 6월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역대 대통령 통치사료  
(문서와 시청각자료 포함) 보존 현황<sup>55)</sup>

	계	종류별	
		문서	시청각자료
계	109,540	-	-
이승만	7,238	-	-
박정희	35,926	-	-
최규하	2,553	-	-
전두환	37,656	11,613	26,043
노태우	16,450	-	-
김영삼	7,739	-	-
윤보선	1,978	-	-

위 표들에 의하면 문서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문서가 가장 많으며 1987년의 법령 정비 이후는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의 문서가 줄어들고 있다(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표 3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정리의 결과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인지라 오히려 문서를 소각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적으로 챙기지 못했으므로 그 일단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정부기록보존소 보관 문서의 대부분은 홍보성 공개기록이 대부분이다. 기타기관 문서의 경우는 법령공포원본, 임용 및 서훈 문서, 각급 행정기관의 보고문서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자체 문서는 인사 등 일반행정 관련기록, ‘각하지사철’ 등의 대통령 정책지시 관련기록, 각 부처의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보고문서는 1960-70년대 생산된 ‘외무관계철’, ‘재경관계철’, ‘치안관계철’, ‘국방관계철’ 등 정부 각 부처의 업무관련 정책 및 집행보고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연설문철, 의전

어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문건은 일반시청각자료 검색결과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핵심적인 통치사료는 거의 외부로의 홍보가 금지 대상이었으며 지금의 시점에서 거의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5) 『조선일보』, 2002년 11월 22일.

일지, 방명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서신철’도 있지만 이도 의례적인 것만이 남아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관련된 미묘한 문서는 전무하다고 할 것이다. 2001년에 퇴임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는 8년 재임기간 동안 통치사료만 7700만 쪽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모든 대통령을 합쳐야 50만 쪽에 불과하다고 한다.<sup>56)</sup>

#### IV. 기록보존전통 단절 극복 방안 모색

##### 1. 통치사료 정리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우리 민족의 자료보존 전통을 계승하려면 통치사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도서관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조선왕조 때의 전통을 계승하여 청와대 내 사료관을 상설 기구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임기 후 방대한 자료를 청와대 내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서구화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립문서보관소-대통령기념도서관의 병립체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sup>57)</sup>

미국의 내쇼날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s)로 상징되는 공공문서 관리 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수집된 자료를 분류, 정리하는 방법과 관리제도의 발달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적 정보수집능력과 문서관리방법의 발달 모두 중요하다. 영-미인들 특유의 ‘과학적 정보수집능력’이 설사 타고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은 실상 문서관리방법의 발달에 따른 학습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자료관리방법이란 문서자료(archives)의 수집, 보존 및 활용에 관련된 지식, 관행 및 시설을 모두 포함하며,<sup>58)</sup> 자료의 종류도 초기에는 일기, 서한, 수고, 문서 등

56) 『조선일보』, 2002년 11월 22일.

57) 이에 대해서는 이완범, 「한국정치사 연구와 통치사료 활용」, 미발표 논문 참조.

58) 영어의 ‘Archives’는 ①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기록적 가치 때문에 보존하고 있는 문서자료, ② 이 기록을 선정, 보존 및 개방의 책임을 담당한 기관 및 ③ 이 기관이 설치된 시설과 건물 등을 뜻한다. 이 단어를 한 가지 우리말로 번역하여 세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

문자로 기록된 자료를 뜻하였으나 현재는 사진, 영화 등 영상자료와 녹음테이프나 음반과 같은 음성자료는 물론 전산자료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文書庫(Archives)는 자료관리방법 체계화의 총집결체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실록 편찬과 같은 나름대로의 사료보존 의식(意識)이 전통 시대로부터 전승되어 있었으므로 구미식 관리방법을 잘 습득하여<sup>59)</sup>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킬 수 있다면 훌륭한 아카이브(문서고)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2. 관계 법령의 시행: 제도적 차원의 정비

1999년 1월에 정부입법으로 제정된 관계 법령을 보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 第13條(大統領관련 記錄物管理)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大統領과 그 補佐機關이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生産 또는 접수한 모든 記錄物은 中央記錄物管理機關<sup>60)</sup>의 長이 이를 蒐集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無斷으로 폐기· 훼손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公共機關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生産 또는 접수한 公共機關의 長은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원활한 蒐集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目錄을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④ 中央記錄物管理機關의 長은 大統領의 任期중료 6月전부터 任期중료까지의 기간 중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관련 記錄物을 蒐集하여 보존하거나

---

기가 어렵다. 이후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문서 또는 문서고(중국어로 檔案館)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내쇼남아카이브’라고 할 때는 자료 자체가 아닌 문서고라는 의미이다.

59) 구미의 경우 프랑스혁명 이후 문서고가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이전까지 문서고의 자료는 별 것이 없었다. 문서고 공개 이후 역사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60)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4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의하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정부기록보존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大統領에게 引繼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 통치사료의 사적 목적을 위한 반출은 적어도 법적·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해 졌다. 또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의하면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
-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
-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
-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
-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 기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관련 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

거의 모든 종류의 통치사료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료가 활용될 수 있다면 한국정치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통치사료 유출 방지 방안: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한국현대정치사 연구자가 통치사료를 원활하게 활용하여 한국의 기록보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기록관리 기구인 ‘대통령기록관’을 꼭 설치해야 한다.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 第8條(大統領記錄館)에는 “大統領관련記錄物の 효율적 관리와 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 소속 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 ‘대통령기록관’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 설치 규정을 보다 강제화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든지, 아니면 미국과 같이 다른 사립기관과 재정적

으로 연계하여 정부기록보존소 체계 내로 통합하여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자료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보존·활용되지 않을 때 과연 법적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정부기록보존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미국식 모델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와 유기적 병립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으나,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아 정부기록보존소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진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법령들에 의한다면 유기적 병립관계를 가질 때 자료 이관이나, 열람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가적 예산 지원과 관리 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다. 이 지원과 계획에 바탕을 두며 별도의 모금을 거쳐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경험했던 최고지도자들은 이승만, 허정, 장면,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이다. 이들의 자료를 한 군데 모아 ‘역대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대통령별로 별개의 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이 대안으로 모색될 만하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중요 자료는 거의 유실되거나, 사적 전유물화되었으므로 김대중 정부의 자료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미국의 예에 따라 출생지에 기록관을 만드는 것도 좋으나 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도권에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출생지에 기록관을 건립한 후 인터넷 상으로 자료를 서비스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임자들의 경우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박정희-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기록관이 아닌 기념관 건립 운동이 활발하여 서울 상암 월드컵 구장 근처에 부지를 확보했으나 반대 여론도 있고 예산 지원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 계속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sup>61)</sup>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경북 구미시 상모리에 기록관부터 건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건립의 첫 삽이 떠진다면 아마도 그 이후의 일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사료관을 만든다

61)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역대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제안함」, 『역사비평』 제34호 (1999); 이상민,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미국사연구』 제10집 (1999)를 참조할 수 있다.

면 공과를 차분하게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자료 중 일부가 이미 연세대학교에 모아져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기록관 건립이 보다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우선 실현 가능한 김대중 기록관 부터 건립한 후 다른 경우를 추진한다면 통치사료의 자의적 유출을 막고 모든 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입각한다면 우남사료관과 같이 사적 기관(연세대학교)에 사료관을 설치하는 것을 유출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직된 생각보다는 사적 기관을 포용하고 활용,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식의 기록보존소-대통령기념도서관 병립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이 바로 이점이다.

법적으로 「公共機關의記錄物管理에관한法律」의 중심이 대통령기록에 있지 않은 만큼 별도의 ‘대통령기록관및대통령기록관리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재임 시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청와대에 별도로 만들고 대통령비서실 각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교육해야 한다. 이들에게 대통령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여 대통령비서실 생산기록이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자료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62)</sup>

또한 임기 말에 이루어지는 대통령문서의 인수인계-이관과 관련해서도 짚어 볼 문제가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의 2항에 다음 구절이 있다.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에 처리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대통령 임기종료 40일전까지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명된 자는 대통령 임기종료 20일전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차기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계속 활용할 필요

62) 박건홍, 앞의 글, 16쪽.

가 있는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귀절 중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자’라 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일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기관이 아니므로 전직 대통령 기록에 대한 이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는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생산되고 보관·이관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의 중립적 보관과 이관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조선왕조 때의 비밀유지 전통에서 교훈을 얻어 모든 자료를 현 최고지도자 재임시에는 비밀에 부친 후 차기 지도자의 취임 후 일괄적으로 비밀상태로 이관하여 10-20년 경과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63)</sup> 또한 중립적인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통령비서실자료관’을 정권 교체 후에도 연속적으로 운영하여 업무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임기 말에 비밀자료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자료의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청와대 내에 통치사료과가 있었으며 “대통령 행사, 회의관련 자료,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을 기능으로 하는 통치사료비서관실에서 자료관 설치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 또한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자칫 홍보성 자료만을 보관하고 나머지 것은 자의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sup>64)</sup> 따라서 임기 후에도 자리가 보전되는 공무원 아키비스트의 충원이 필요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통치사료비서관 제도가 폐지되었고 비서실장 아래에 국정기록비서관을 두었다.

또한 건물만 확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보존 시설을 갖추고 전문 연구 인력(archivist)이 배치되어 정리·목록화·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 자료들을 단순히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일종의 역사문화시설로 보아야 한다. 박물관과 도서관 건립에만 급급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전문인력의 양성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사료는 영영 지하실 창고 같은 ‘문서고’에서 사장되거나 폐기되어 오욕

63) 미국의 경우 전임대통령이 지정한 비공개 대통령기록은 「정보자유법」에 적용 받지 않으며 최대 12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광견홍, 앞의 글, 25쪽.

64)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역대 대통령 자료실(<http://www.cwd.go.kr/warp/kr/visit/museum/expresident/> [검색일 2003년 3월 1일])이 있으나 각 대통령의 홍보용 선전만이 실려 있고, 역사적 자료는 거의 없다.

의 역사가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 제공된 자금을 둘러싸고 2003년 2월 현재 논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대중의 재임 중 생산한 비밀문서가 이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sup>65)</sup> 통치사료 중 비밀문건 상당수가 제대로 인수 인계되지 않을 전망이 있다고 2월 5일 국가기록연구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sup>66)</sup> 청와대와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모든 기록물을 24일까지 수집 완료한다고 했다.<sup>67)</sup> 재임 중의 모든 통치사료는 그것이 정권의 어두운 면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넘겨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 V. 맺음말

실리(J. R. Seeley)는 19세기 말에 간행된 교과서에서 “정치학을 모르는 역사는 열매가 없고, 역사학을 모르는 정치학은 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sup>68)</sup> 역사적 어프로치가 주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시대를 반영하는 이러한 주장은 경험주의적 미국식 사회과학이 풍미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 고리타분한 편견일 뿐이다. 그렇지만 한국 전통 역사학의 자료적 유산을 현대 한국 정치학에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유실되어 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본 논의를 전개하였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정치사를 서술했던 전통시대에서 피치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민주주의의 시대로 전환되었으므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통치사료가 정치사 연구의 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처럼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최

65) “청와대 사료 누락없이 넘겨야,” 『중앙일보』, 2003년 2월 7일; “청와대 통치사료 제대로 넘겨라,” 『조선일보』, 2003년 2월 7일.

66) 청와대 측이 ‘비밀기록이 많아 이들의 목록은 넘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3년 2월 6일. 이외에도 정부기록보존소가 주장하는 소단위를 청단위로 격상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정책제안 관련 토론회 내용, 2003년도 제1회 목요기록문화카페, 2003년 1월 23일.

67) 『중앙일보』, 2003년 2월 8일.

68) J. R. Seeley,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London: Macmillan & Co., 1896), pp. 4-5; 신복룡, 「한국 정치 사학사」, 신복룡, 『한국정치사』 제4판, 박영사 (2003), 15쪽에서 재인용.

고권력자의 통치사료는 정치사 연구에서 있어 여전히 중요하며 이것 없이 정치사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료 보존과 검색에 대한 전통적 안목을 현대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춘추관이라는 명칭이 1990년 언론사 기자들이 상주하는 청와대 프레스센터(대통령 등의 기자회견 장소로 활용됨)에서 다시 살아났다.<sup>69)</sup> 현대의 역사서는 관찬 역사서가 주류가 아닌 민간 학자들이 저술하는 다양한 사서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사실과 연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문과 다양한 언론매체에만 의지하여 연구할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관찬 자료가 있어야 정치사를 연구하는데 힘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관련 법규가 엄밀화되고 별도의 대통령 통치사료 보관센터가 설립되어 심화된 연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선 왕조 때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기구 승정원의 뒤를 이은 대통령 비서실의 일지가 일정 기관 경과한 후 공개되어 연구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시스템과 공개 제도가 운영된다면 최고 통치자들은 역사를 두려워하여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 특유의 자료 보존과 정리 정신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일 것이다.

우리의 사료 보존과 편찬 전통이 오늘에 적극적으로 계승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대의 역사를 관찬하는 것이 서구의 역사인식과 상충되며 서구화된 현재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사료 보존에 관해서는 동양적 전통<sup>70)</sup>을 단절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관찬 역사서는 지양되어

69) 춘추관이라는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예문 춘추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오늘날의 자유언론의 정신을 잘 상징한다는 뜻에서 채택되었다고 한다. 고려-조선시대의 시정(그 당시의 정사)의 기록을 맡아오던 관청이었다. 고려 개국초에는 사관이라 하다가 1308년(충렬왕 34년) 이를 문한서에 병합하여 예문 춘추관으로 고쳤다. 1325년(충숙왕 12년)에 예문관과 갈라져 춘추관으로 독립하였다. 춘추관은 1356년(공민왕 5년) 사관으로 개칭하였다가 62년 다시 춘추관으로 되고 89년에는 예문관을 합하여 예문 춘추관으로 되었다. 조선개국 당시에는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 춘추관이라 하다가 1401년(태종 1년) 예문관과 분리하여 춘추관으로 독립되었고 1894년(고종 31년, 갑오경장) 폐지되었다. [http://www.cwd.go.kr/korean/intocwd/walk/incwd\\_walk7.php](http://www.cwd.go.kr/korean/intocwd/walk/incwd_walk7.php) (검색일 2002년 10월 1일).

야 하지만 사료의 보존은 국가가 관여하여야 보다 더 체계적인 보관과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문서철」도 『同文彙考』의 전통을 계승하여 비밀문서까지 포괄하는 보다 더 활용 가능한 자료집으로 공刊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문화적 전통을 재창조(the reinvention of tradition)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치사료와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한 사료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문화의 보존에 대한 조선시대적 전통이 현대에 들어와서 통치자료 활용으로 계승된다면 과거의 보존만 있고 열람은 통제하던 모델도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보존된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보존과 활용이 양립하는 새로운 21세기적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강영철,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과 연구 편찬」, 『동아세아 사료연구편찬기관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역사편찬의 전통과 각국의 사료연구-편찬』,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주최, 2002년 12월 16~18일.

70) 국사편찬위원회 강영철 편사부장은 ‘修史傳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강영철,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과 연구 편찬」, 동아세아 사료연구편찬기관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역사편찬의 전통과 각국의 사료연구-편찬,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주최, 2002년 12월 16~18일, 23쪽. 국가기구가 사료의 수집·정리·편찬·연구작업을 하는 이러한 전통 중 필자는 편찬보다는 수집·정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승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東京大 史料編纂所 保立道久 교수는 일본에서도 근대사를 국가가 편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이 회의의 토론자로 참여했던 필자는 이 점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으며 東京大 史料編纂所 소장 加藤友康 교수도 메이지 시대 이후의 사료는 자신의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고병익, 「동아제국의 실록」, 민족문화추진회 (편), 『「조선왕조실록」과 고전국역사업』, 조선왕조실록  
완역 기념 학술회의, 1994년 3월 25일, 8~11쪽.
- 곽건홍, 「대통령기록 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연구』 제4호, 2001년 10월, 16쪽.
- 김동현, 「이승만 사료의 비밀」, 『월간조선』, 1992년 1월, 516-535쪽.
- 김염자, 「당대 사관의 역사인식: 한유의 사론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80집, 1978년 12월.
- 김영국, 「역사연구와 정치학」, 『한국정치학회소식』 제23권 5호, 1999년 12월 28일, 5쪽.
- 김용구, 「새로운 외교사 연구를 위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소식』 제104호, 2002년 10월 30  
일, 3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28~37, 국사편찬위원회, 1996~1997
- 박찬승, 「역대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제안함」, 『역사비평』 제34호, 1999.
-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한울, 1999.
- 배현숙 편역, 『중국자료탐색방법』, 민족문화사, 1994.
- 신복룡, 「3·1운동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신복룡, 『한국정치사』 제4권, 박영사, 2003.
- 신복룡, 「한국 정치 사학사」, 신복룡, 『한국정치사』 제4권, 박영사, 2003, 19쪽.
- 양병우, 「사실」, 양병우, 『역사의 방법』, 민음사, 1988, 29~71쪽.
- 오향녕, 「실록에서 일성록으로: 제도와 역사관의 전환」, 한국역사연구회·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공  
동주최 발표회 주제: 한국역사기록의 관리와 발전방안, 2000년 10월 21일.
- 오향녕, 「史官制度 成立史의 제문제」, 『泰東古典研究』 제14輯, 1997년 12월, 3~35쪽.
- 이상민,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미국사연구』 제10집 1999.
- 이성무,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연구」, 민족문화추진회 (편), 『「조선왕조실록」과 고전국역사업』,  
조선왕조실록 완역 기념 학술회의, 1994년 3월 25일, 36쪽.
-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경제와 사회』 통권 46호, 2000년 여름, 25쪽.
- 李宗侗, 「중국 고대의 사관제도」, 박한제 (역),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985, 126쪽.
- 『이화장 소장 우남이승만문서 東文篇』전18권,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전13권, 국사편찬위원회, 1966~1978.
-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 8~17, 국사편찬위원회, 1998~2001.
- 국사편찬위원회, 『資料大韓民國史』전7권,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4.
- 전해중, 「중국인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전해중·길현모·차하순, 『역사의 이론과 서술』, 서강대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5, 20~25쪽.
- 鄭求福, 「朝鮮初期의 春秋館 實錄編纂」, 『擇窩許善道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284~304쪽.

車勇杰, 「實錄·史官·史庫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편), 『史庫址調査報告書』, 국사편찬위원회, 1986, 1~33쪽.

차하순,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 1988.

최원기·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김영사, 2000.

韓祐旆, 「朝鮮前期의 史官과 實錄編纂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 제66호, 1988년 12월, 77~130쪽.

한홍구, 「북한관계 문헌 해제」,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1989, 286~326쪽.

Abbott, Andrew, “What Do Case Do? : Some Notes on Activity in Sociological Analysis,” Charles C. Ragin & Howard S. Becker, eds., *What is a Cas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Bleicher, Josep, *Contemporary Hermeneutics as Method, Philosophy and Critique*, London: RKP, 1980.

*Elementarkurs Philosophie*, Düsseldorf : Econ Verlag, 1977(백승균 역, 『철학적 해석학』, 경문사, 1982).

Griffin, Larry J., “Narrative, Event - Structure Analysis, and Causal Interpretation in Historic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No. 5, March 1993.

Hobsbawm, E. J., “The Revival of Narrative : Some Comments,” *Past and Present : A Journal of Historical Studies*, No. 86, Feb. 1980.

Kann, Mark E., *Thinking about Politics : Two Political Science*, New York : West Publishing, 1980 ; 한홍수·김영래 (공역), 『현대정치학의 이해 : 정치이론과 연구방법』, 대왕사, 1986.

Kim, Samuel S., “Research on Korean Communism: Promise versus Performance,” *World Politics* Vol. 32, No. 2, January 1980.

Lew, Young Ick and Sangchul Cha, eds.,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 1948-1960: A Catalogue* (Seoul: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02)

Pöggler, Otto, *Hermeneutische Philosophie*, 1972(박순영 역, 『해석학의 철학』, 서광사, 1993).

Stone, Lawrence, “The Revival of Narrative : Reflection on a New Old History,” *Past and Present : A Journal of Historical Studies*, No. 85 (Nov. 1979) ; Lawrence Stone, *The Past and the Present*, London : RKP, 1981, pp. 74~96(로렌스 스톤, 「서술적 역사의 부활 : 낡은 신 사학에 대한 반성」, 이광주·오주환 (공편), 『역사이론』, 문학과지성사, 1987)

*The Syngman Rhee Telegram*, in 4 volumes(Seoul: Yonsei University, 2000).

Tosh, John, *The Pursuit of History: Aims, Methods and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Modern History*, 2nd ed. London: Longman, 1991.

주제어

역사적 접근, 이야기체식 서술방법,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통치사료, 대통령사료관, 정부기록보존소